

● 제268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6. 6. 21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최웅식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1265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최웅식 의원 외 10명
- 나. 제안일 : 2016. 6. 10.
- 다. 회부일 : 2016. 6. 10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민원처리 전담과 민원행정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1부시장 직속 기구인 “신속행정추진단”을 “시민소통기획관”으로 조직 소관을 변경 (7.1일자)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‘신속행정추진단’을 삭제함(안 제33조제1항제2호 자목 삭제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).

다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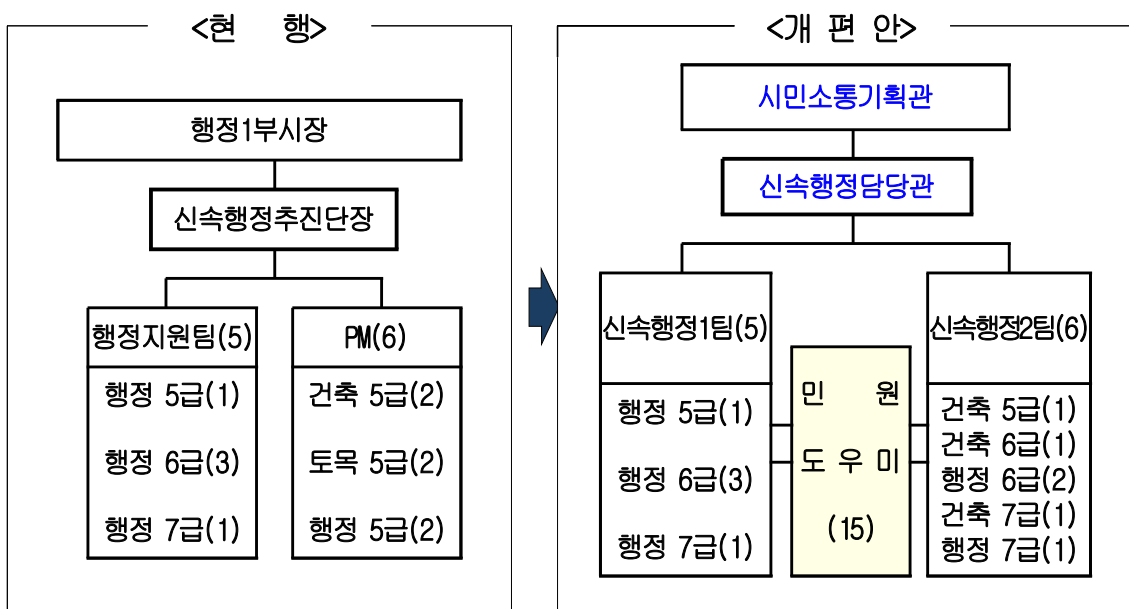
- 본 개정안은 서울시 민원행정 처리의 통합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1부시장 직속 기구였던 ‘신속행정추진단’을 ‘시민소통기획관’으로 그 조직소관을 변경(7.1일자)함에 따라, ‘신속행정추진단’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임.

2 ‘신속행정추진단’ 조직 소관 변경(안 제33조제1항 제2호 자목 삭제)

- ‘신속행정추진단’은 2015년 7월 10일 출범한 행정1부시장 직속 기구로서, 건축허가관련 법정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각종 건축관련 규제를 발굴·개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, 현재 ‘행정자치위원회’ 소관 부서로 지정되어 있음.
- 그러나 건축허가 관련 법정민원 처리 지원 업무의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고, 건축허가 기간이 지연되는 이유가 주로 사업주 내부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신속행정추진단이 개입할 여지가 제한되어 왔음.
- 또한 신속행정추진단의 기능 일부가 건축허가(건축기획과), 민원대응(시민봉사담당관), 규제개선(법무담당관)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중복되어 조직의 역할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책임 있는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(‘15.11월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).

- 이에 따라 신속행정추진단의 기존 업무에서 ‘수혜적 행정서비스’까지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밀착 민원처리 전담과 각종 민원행정의 통합성·효율성 강화를 위해 ‘행정1부시장 직속’에서 ‘시민소통기획관’으로 조직 소관을 변경하려는 것임.

<그림 1> 신속행정추진단 조직개편(안)



- 본 개정안은 이러한 서울시의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해 기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‘신속행정추진단’을 그 소관에서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<표 1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① (생략)	제33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행정자치위원회	2. 행정자치위원회

현 행	개 정 안
가.~아. (생략) 자. 신속행정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.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.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타.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파.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하.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.~10. (생략) ② (생략)	가.~아. (현행과 같음) <삭제> 자.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.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카.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타.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파.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.~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3 종합 의견

- 이상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신속행정추진단의 조직 소관 변경(행정1부시장 직속 → 시민소통기획관) 사항을 반영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‘신속행정추진단’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